

융복합전공에 관한 시행세칙

제정 2019. 3. 1.

개정 2022. 3. 2.

개정 2023.12. 1.

제1조(목적) 이 시행세칙은 학부 학칙 제37조의3항에 따라 융·복합전공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융합전공이란 2개 이상의 전공이 융합하여 새로운 전공을 개설하고 이를 이수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.

② 복합전공이란 2개 이상의 전공이 융합하여 융합된 학문 내용을 포함하는 전공을 개설하고 이를 이수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.

③ IPE(InterProfessional Education) 교육과정이란 보건의료 전문직 간 통합 교육과정을 말한다. (신설 2022.3.2.)

제4조(이수 자격) 모든 학과(부) 학부생은 융·복합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. 단, 각 전공별로 신청대상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5조(신청) ① 융·복합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기간 내에 이수신청을 하여야 하며, 융·복합전공 책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융·복합전공을 신청하는 전공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.

제6조(선발기준 및 인원) ① 융·복합전공 학생 선발은 신청일 기준 직전 학기까지의 학업성적 평점평균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고, 동점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취득학점수가 많은 학생 순으로 선발한다.

② 융·복합전공 선발인원은 최소 10명으로 하며, 교육여건 및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그 인원을 조정할수 있다. 다만, 재정지원사업 등으로 융·복합전공이 설치·운영되는 경우 최소 인원에 예외를 둘 수 있다.

제7조(교과과정 및 운영위원회) ① 융·복합전공 편성 학점 수는 이수학생의 편의를 고려하여 최소 60학점 이상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융·복합전공 교과과정은 최소 2개 이상의 전공 교과목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

③ 융·복합전공 운영 시 기존의 개설과목을 활용하도록 하며, 신설과목 개설이 필요한 경우 최소 7과목 이내로 한다.

④ 융·복합전공의 운영 및 신설, 폐지 관련 사항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을 따른다.

제8조(융·복합전공 이수학점 및 졸업인정 등)

① 융·복합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주전공 최소 이수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해당 융·복합전공 교과과정에 따라 최소 36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

② 융·복합전공 참여 학과(부) 소속으로 융·복합전공 이수를 승인 받고 복수전공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이 융·복합전공선택 교과목을 이수하는 경우, 21학점 이내에서 개설학과에 따라 주전공 전공학점으로 중복 인정한다. 다만, 융·복합전공선택 교과목 중 소속

학과(부)에서 개설한 과목은 주전공의 학점으로만 인정할 수 있다.

③ 융·복합전공 이수를 승인 받지 않았거나 포기하는 경우 이수한 융·복합전공 교과목은 전공선택으로 인정한다. 다만, 소속 학과(부)에서 개설한 융·복합전공선택 교과목은 소속 학과(부) 교과과정의 이수구분을 따른다.

④ 융·복합전공이수 승인 및 수강신청과 이수 지도는 융·복합전공별 책임교수가 담당한다.

⑤ 소속 학과(부)의 졸업요건과 융·복합전공의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게 해당 융·복합전공의 이수를 인정하며 학위증에 이수 전공 및 학위명을 기재하거나, 이수전공을 병기한다. 또한 융·복합전공만으로 60학점 이상 이수 시 융·복합전공 단독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

⑥ 융·복합전공 이수학점이 60학점 미만인 경우 단독학위는 불가하나, 복수전공으로 병기하며, 36학점 미만에서 21학점 이상 이수시에는 부전공으로 병기한다.

⑦ IPE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'수료증' 및 '인증서'를 발급한다. (신설 2022.3.2.)

⑧ 수료증 및 인증서 발급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. (신설 2022.3.2.)

제9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신설 2023.12.1.)

이 규정은 2023학년도 신입생까지만 적용하며,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는 다전공설치및 운영에관한규정을 따른다.